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모델의 특성 연구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모델의 특성 연구

('26.9.30.,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오만,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신흥 금융중심지 국가들은 외환, 조세 등 규제 특례를 결합한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여 국제자본 유입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신흥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 모델은 사법체계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분류됨 :

- (독립 법역 모델) 오만, 카자흐스탄과 같이 자국 영토 내 영미법 (English Common Law) 기반의 독립법원 및 사법체계를 특정 구역에 수립하고 기존 법체계와 분리하는 방식의 모델

- (기존 법역 특례 모델) 베트남, 인도와 같이 영토 분리 및 사법체계의 이원화 없이 자국의 기존 법체계만으로 특별경제구역 지정 및 외환·감독·세제 특례를 결합하는 방식의 모델

▸ 본 연구는 「신흥 국제금융센터 경향 및 시사점」 후속 연구로 법역 분리 없이 특구 지정 및 외환·감독·세제 특례 결합을 통해 국제자본을 자국 영토로 유입한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모델의 핵심 요건을 조문 단위로 실증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함

▸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의 특성은 지역과 법역의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거래에 대해 일반 국내금융과 구별되는 외환·감독·세제 특례를 적용하여 자본시장의 기능적 역외성을 구현한 데 있음

• 본 연구의 기능적 역외성 개념은 조작적 정의로써 영토 내 국제금융거래에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역외거래 수준의 혜택을 적용하여 일반 국내금융과 구별되는 거래 환경을 형성한 상태를 의미함

• 기능적 역외성이 구현되는 4대 요건 : ① 비거주자 및 역외수요 거래, ② 외화표시 및 국제금융 거래, ③ 국내 일반 금융시장과 구별되는 금융 특례·감독체계, ④ 국내 금융시장 거래 및 자금흐름에 대한 분리 체계

▸ 결과적으로 인도 국제금융센터는 두바이나 카자흐스탄처럼 별도 영토 및 법역 분리 없이 자국의 통일된 사법부(형법, 상법, 관할 법원 등) 관할을 유지하며 외환·

감독·세제 특례를 특정 공간에 중첩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토 내에서 자본시장의 기능적 역외성을 구현함

1 서 론

□ 연구 배경

○ 인도는 자국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 법률상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자라트주 경제특구 내 조성된 국제금융서비스센터(이하 GIFT CITY)를 통해 국외에서 이루어지던 금융거래가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실체법을 설계함

○ 외환·세제 특례와 IFSCA 단일 감독체계 등과 관련된 법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싱가포르·두바이 등 해외 금융중심지에서 수행되던 인도 관련 국제금융업무의 국내 환류를 추진함

- GIFT IFSC 설립 후 증가한 금융기관 수와 은행·자본시장 거래 규모[표1]

<표1. GIFT IFSC 주요 금융실적>

(단위 : 개, US$ bn, %)

구분	'20.9 (IFSCA 출범 전)	'24.12 (IFSCA 출범 후)	증가율(%)
IFSCA 등록·허가·인가 사업자	129	750 이상	481
은행 수	14	28	100
은행 총자산	14	78.3	460
은행 총거래액	53	1,095	1,966
IFSC 거래소 월간 거래대금	21.7	85	290
거래소 총 채권상장액	23	63.6	173
ESG 채권상장액	2.1	15.4	619
보험기관 수	16	41	156
보험사(IIO) 보험·재보험 총보험료	.045	.504	1,020

주) IFSCA 원자료를 기준으로 증가율 표기

(출처 : IFSCA, Business Growth Across Various Verticals, CPSE Summit 2025 Outcome Document)

- 은행 총자산 약 5.6배, 은행 총거래액 약 20.7배, IFSC 거래소 월간 거래대금 약 3.9배 확대

ㅇ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설치하지 않고 인도 법체계 내 경제특구 및 외환·감독·세제 특례의 결합을 통해 국제금융을 내재화한 GIFT IFSC 법 구조를 분석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역외금융 거래를 구현한 요건을 도출함

□ 연구 범위

ㅇ 인도 GIFT IFSC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법·제도 및 정책

- 국내 금융시장과 기능적 분리를 가능하게 한 인도 국제금융센터 관련 법제도

• 인도경제특구법 Special Economic Zones Act(2005)

•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법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 Act (2019)

•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외환관리규정 Foreign Exchange Management(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Regulations(2015)

• 소득세법 Income-tax Act(2025)

2 인도 국제금융센터 모델의 핵심 요건 분석

□ 인도경제특구법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이하 SEZ Act)

CHAPTER 8 (Miscellaneous) §53(1)&(2)

53. Special Economic Zones to be ports, airports, inland container depots, land stations, etc., in certain cases.—A Special Economic Zone shall, on and from the appointed day, **be deemed to be a territory outside the customs territory of India f**or the purposes of undertaking the **authorised operations.**

(2) A Special Economic Zone shall, with effect from such date as the Central Government may notify, **be deemed to be a port, airport, inland container depot, land station and land customs stations**, as the case may be, under section 7 of the Customs Act, 1962 (52 of 1962):

ㅇ 경제특구 내 승인사업에 한정하여 인도 관세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동시에 항만・공항・내륙컨테이너기지・세관역 등에 준하는 통관거점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특구와 본토 사이에 별도의 기능적 관세 경계를 구분함

※ 관세법(Customs Act, 1962)상 통관과 물류에 한정된 법률로 형법, 민법, 회사법, 노동법 등 인도의 일반 실체법은 특구 내 그대로 적용되고 오직 관세와 간접세만 국내와 분리됨

- (§53 (1)) 물리적으로 인도 영토 내에 있으면서도 관세상 '외국(수출)'으로 간주하는 직접적인 근거

- (§53 (2)) 관세경계를 항만・공항・세관역과 같은 통관거점으로 간주하여 특구 자체가 법률상 공식적으로 공항이나 무역항과 같은 국경 세관으로 작용하도록 설정

※ 실질적인 역외 금융거래에 필요한 외환거래·외환관리 체계는「SEZ Act」와 병렬적인 별도의 외환법령에서 규율하며 양 제도는 상호 결합을 통해 SEZ·IFSC의 역외금융 기능이 완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됨

CHAPTER 5 (Single Window Clearance) §17(1)&(2)&(3)

17. Setting up and operation of Offshore Banking Unit.—(1) An application for setting up and operation of an Offshore Banking Unit in a Special Economic Zone **may be made to the Reserve Bank in such form and manner** as may be prescribed.
(2) On receipt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the Reserve Bank shall, if it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fulfils all the conditions specified under sub-section** (3), grant permission to such applicant for setting up and operation of an Offshore Banking Unit.
(3) The Reserve Bank may, **by notification, specify the terms and conditions** subject to which an Offshore Banking Unit may be set up and operated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ㅇ 경제특구 내 입주하는 은행 점포가 국내 영업점과 구분되는 역외은행 단위 승인 권한은 인도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수권 되어 본토 루피화 통화체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작동, 영토 내에서 역외 거래가 가능하게 됨

※ 특구 내(관세 경계 §53)에서 외화로만 작동하는 은행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는 인도 영토에 있으면서도 금융 운영 및 회계상으로는 해외지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방화벽 형성

- (§17 (1)) 일반 국내 영업점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외은행단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인도중앙은행에 신청해야 함

- (§17 (2)) 특구 내 역외은행단위의 설치 및 운영 승인 권한을 중앙은행으로 전속시켜 역외거래에 부합하는 별도 재무 건전성 및 영업 요건을 심사하도록 설계

- (§17 (3)) 명문화된 포괄적 위임 권한에 근거하여 중앙은행의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특구 내 역외은행단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조건(지정외화, 지급준비율 적용 제외, 분리 회계 등)을 설정함

CHAPTER 5 (Single Window Clearance) §18(1)&2)

18. Setting up of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1) **The Central Government may approve the setting up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in a Special Economic Zone** and prescribe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nd operation of such Centre:

Provi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approve only on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in a Special Economic Zone.

(2) **The Central Government may, subject to such guidelines as may be framed by the Reserve Bank, 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the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nd such other concerned authorities,** as it deems fit, prescribe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peration of Units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ㅇ 중앙정부가 경제특구 내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의 설치를 승인하고 센터 및 입주 사업단위(Unit)의 설립·운영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경제특구와 구분되는 금융서비스 특화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SEZ Act (2005) 제정 당시 국제금융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모법에 명시하여 경제특구 내에서 별도의 금융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18 (1)) 경제특구 내 국제금융서비스센터의 설치·승인 권한을 중앙정부에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해당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도록 명시함

※ 하나의 경제특구에는 하나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만 승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동일 경제특구 내 복수 IFSC의 설치를 배제하고 지정된 금융서비스 구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시장 인프라 및 행정·감독 기능이 집중되도록 규정

- (§18 (2))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 입주하는 개별 사업단위의 설립 요건과 운영 조건을 중앙정부가 정하되, 인도중앙은행,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인도보험규제개발청 등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제정한 개별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규정함

-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감독체계가 IFSC 내 사업자(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 당시(2005)에는 업권별 감독기관이 각자의 소관 금융업무를 규율하는 분산형 감독체계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후 IFSCA Act(2019) 제정을 통해 IFSC 관련 금융상품·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감독 기능이 IFSCA를 중심으로 통합

CHAPTER 6 (Special Fiscal Provisions for Special Economic Zones) §26(1)(f)

26. Exemptions, drawbacks and concessions to every Developer and entrepreneur.—(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2), every Developer and the entrepreneur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exemptions, drawbacks and concessions, namely:—

(...)

(f) exemption from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leviable under section 98 of the Finance (No. 2) Act, 2004 (23 of 2004) in case **the taxable securities transactions are entered into by a non-resid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

ㅇ 경제특구 내 개발사업자(Developer) 및 입주사업자(Entrepreneur)에 관세·조세 등 특례를 부여하는 재정지원 제도로 비거주자가 IFSC를 통해 거래하는 과세 대상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Securities Transaction Tax)을 면제하는 금융거래 특화 조항

※ 인도 국내 증권거래에는 「Finance (No. 2) Act, 2004」 §98에 따라 증권거래세 부과

- (§26)(1)(a)~(e)·(g) 원칙적으로 경제특구 내 개발업자·입주사업자 전반 대상 관세·소비세·서비스세·판매세 등의 면제·환급 혜택을 규정

※ 반면 §26(1)(f)는 적용 거래를 '비거주자가 IFSC를 통해 수행하는 증권거래'로 특정하여 국제금융거래에 직접적인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IFSC 내 국제금융기관 및 금융거래 유치를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기능

- 역외 은행 및 국제금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한 §17, §18와 함께 §26(1)(f) 금융거래 세제 특례를 적용하여 IFSC의 실질적 활용과 역내 국제금융거래의 집적을 촉진하는 규정

※ SEZ Act §26은 경제특구 제도에 조세·재정상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제도의 기본적 원리를

보여주는 핵심 조항이나, 실제로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은 이후 개별 조세법의 개정 및 일몰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되어 현시점 적용 여부는 관련 조세법의 현행 규정 별도 확인이 필요

CHAPTER 8 (Miscellaneous) §49&§51

49. Power to modify provisions of this Act or other enactments in relation to Special Economic Zones.—(1) The Central Government may, by notification, direct that any of the provision of this Act (other than sections 54 to 56) or any other Central Act or any rules or regulations made thereunder or any notification or order issued or direction given thereunder (other than the provisions relating to making of the rules or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a) **shall not apply to a Special Economic Zone** or a class of Special Economic Zones or all Special Economic Zones; or

(b) shall apply to a Special Economic Zone or a class of Special Economic Zones or all Special Economic Zones only with such **exceptions, modification and adaptati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

51. Act to have overriding effect.—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have effect **notwithstanding anything inconsistent therewith contained in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r in any instrument having effect by virtue of any law other than this Act.

ㅇ (§49) 중앙정부 고시를 통해 SEZ Act 일부 조항 또는 다른 중앙법률 및 그 하위 규정 등을 경제특구에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수정·조정을 거쳐 적용하도록 하는 포괄적 특례 적용 조정 권한

- 통상적으로 의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체법 적용방식을 경제특구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여 특구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비교적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

※ 관련 고시안의 의회 제출 및 30일간 양원 심의·수정 요구권 부여를 통한 입법부 통제 장치 마련

※ 노동조합, 노사분쟁, 근로조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49 수정 권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

ㅇ (§51) SEZ Act의 규정과 다른 현행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SEZ Act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비상충 조항을 규정

※ SEZ Act가 일반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 적용 법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특구 제도의 법적 실효성과 사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

- 다만 SEZ Act가 다른 법률 전체(형법, 노동법 등)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양 법률 간 규정이 실질적으로 불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구조로 구성

□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법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 Act, 2019(이하 IFSCA Act)

CHAPTER 3 (Powers and Functions of Authority §12(1)&(2)

12.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it shall be the duty of the Authority to develop and regulate the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servic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by such measures as it deems fit.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provisions in sub-section (1), the powers and functions of the Authority shall include—
(a) regulating the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servic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which have been permit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any regulator for any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b) regulating such other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service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s may be notifi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c) recommend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such other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servic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may be permitted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by the Central Government;
(d)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prescribed.

ㅇ 별도의 영미법계 사법기구 설치 없이도 금융의 3대 핵심 요소인 금융상품(Products)·금융서비스(Services)·금융기관(Institutions)에 대한 개발 및 규제 권한을 단일 기구인 IFSCA에 포괄 수권하여 영토 내 역외 금융관할권을 확립함

※ SEZ Act, §18(2) 초기 체제(개별감독권한)를 개혁한 핵심 조항

- 금융기관뿐 아니라 신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 특례·육성 수권으로 선박·항공기 리스, 핀테크 등 혁신 금융 산업에 탄력적인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함

- 법리상 충돌이 없도록 조항을 설계하여 인도의 인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는 4대 금융규제기관(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보험규제개발청, 연금규제개발청)의 특구 내 권한 행사를 차단하고 금융 분야 단일창구 인허가 체계를 완성함

CHAPTER 5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20

20. E**very transac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shall be in such foreign currency** as may be specified by regulations in consult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ㅇ 국제금융센터(IFSC)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서비스 거래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감독기관(IFSCA)이 규정하는 외화(Foreign Currency)로 수행하도록 함

- IFSCA는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에 대해 별도 규제체계 운영, Banking Unit(은행업) 「Banking Regulations, 2020」, 별도 법인 Finance Company 및 지점 형태의 Finance Unit에는 「Finance Company Regulations, 2021」 적용

  ※ Banking Unit은 IFSCA Banking Regulations에 따라 '24년 개정 기준 15개 지정외화(specified foreign currencies)로 영업이 가능하며, Finance Company·Finance Unit 등은 개별 규정에 따라 자유태환 외화를 사용

- 인도 루피(INR)를 금융서비스 거래의 원칙적 결제통화에서 분리하고 외화 중심의 거래체계를 설정함으로써 국내 일반 금융시장과 구분되는 IFSC의 통화·외환관리 체계를 형성하는 법적 근거 형성

□ 국제금융센터 외환관리규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Regulations(2015)

Regulation §3 Non-Resident Status of IFSC Financial Institutions

Any financial institution or branch of a financial institution set up in the IFSC and permitted/recognised as such by the Government of India or a Regulatory Authority **shall be treated as a person resident outside India**.

ㅇ IFSC에 설립되고 인도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인정을 받은 금융기관 및 지점은 외환관리법상 비거주자(person resident outside India)로 간주

※ 상위법「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제2조에서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위규정인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외환관리규정(2015)」에서 IFSC 금융기관의 비거주자 지위, 영업통화 및 거래상대방, 다른 외환관리규정의 적용 관계를 별도 규율

- 「경제특구법(SEZ Act, 2005)」에 따른 IFSC의 공간적 요건과 인도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허가·인정 요건을 결합하여 인도 영토 내에 설립된 금융기관 및 지점에 외환관리법상 비거주자 지위를 부여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Regulation §4 Currency of Business and Permitted Counterparties

A financial institution or branch of a financial institution shall conduct such business in such foreign currency and with such persons, whether resident or otherwise, as the concerned Regulatory Authority may determine.

ㅇ IFSC 내 금융기관 및 지점의 영업에 사용할 외화와 거래상대방(거주자·비거주자)의 범위를 관련 감독기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

※ 법개정(2020)을 통해 인도중앙은행이 일반적 또는 개별적 허가에 따라 IFSC 금융기관 및 그 지점의 인도 루피화 영업과 거래상대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Regulation §5 Exemption from Other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3) of the Act, and save as otherwise provided in these Regulations or any other Regulations or directed by the Reserve Bank of India from time to time, nothing contained in any other regulations shall apply to a financial institution or branch of a financial institution set up in an IFSC.

ㅇ IFSC 내 설립된 금융기관 및 그 지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른 외국환관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

※ 본 조문은「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제1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며 해당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인도중앙은행이 수시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의 예외를 인정

□ 소득세법 Income-tax Act(2025)

※ 구법 「소득세법(1961)」을 대체하는 신법「소득세법(2025)」을 2026. 4. 1. 시행, 이후 「조세 및 기타 법률(개정)법(2026. 8. 17. 공포)」을 통해 추가 개정(원칙적으로 2026. 4. 1. 소급 시행), 구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법률의 적용은 유지

§147 Deductions for income of Offshore Banking Units and Uni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1) **Where the following assessee has any income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sub-section (3), there shall be allowed a deduction equal to 100% of such income**:—

(a) a scheduled bank, or a bank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a country outside India, and having an Offshore Banking Unit in a Special Economic Zone;or

(b) a unit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2) Irrespective of anything contained in section 80LA of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the deduction shall be allowed,—

(a) for an entity mentioned in sub-section (1)(a),—

(i) **for twenty consecutive tax years beginning from the relevant tax year; and**

(ii) **in a case, where the tenth year, out of the period of ten consecutive years of deduction allowed under section 80LA(1) of the said Act has ended on the 31st March, 2025, for further ten consecutive years from the tax year beginning on the 1st April, 2026;** and

(b) **in the case of an entity mentioned in sub-section (1)(b), for twenty consecutive tax years out of twenty-five years beginning from the relevant tax year, at the option of an assessee.]**

(3) The incom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be the income from—

(a) an Offshore Banking Unit located in a Special Economic Zone; or

(b) the business activities referred to in section 6(1) of the Banking Regulation Act, 1949 (10 of 1949), with undertakings in a Special Economic Zone or entities that develop, develop and operate, or develop, operate and maintain Special Economic Zone; or

(c) **the approved business activities of any Unit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set up in a Special Economic Zone; or**

(d) **transfer of an asset being, an aircraft or a ship, leased by a unit referred to in clause (c) if such unit commenced its business operations by 31st March,2030.**

(...)

(6)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relevant tax year" shall be,—

(i) in case of an entity referred to in sub-section (1)(a), the tax year in which permission under section 23(1)(a) of the Banking Regulation Act,

1949 (10 of 1949), or permission or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ct, 1992 (15 of 1992) or any other

relevant law in force was obtained; or

(ii) in case of an entity referred to in sub-section (1)(b), the tax year in which permission under section 23(1)(a) of the Banking Regulation Act, 1949 (10 of 1949), or permission or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ct, 1992 (15 of 1992), or permission or registr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 Act, 2019 (50 of 2019) was obtained;

(b) "Unit"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assigned to it in section 2(zc)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28 of 2005);

(c) "aircraft" and "ship" shall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Schedule VI (Note 3).]

ㅇ (§147) IFSCA법 등 관계 금융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 IFSC 내 승인된 사업 활동 수행 → 승인된 사업소득의 100% 공제를 결합하는 신법으로 기존의 규제 감독기관 중심 체계 공고화

- (§147(1)&(2)) 기존의 100% 소득 공제를 유지하며 기간을 대폭 확대(10년→20년)하여 승인된 사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장기 조세특례 체계 구축, IFSC 제도 지속성 제고

- (§147(3)(d)) 2030년 3월 31일 이전 IFSC에 영업을 개시한 리스 사업체가 항공기 또는 선박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인 소득을 100% 공제함을 규정

- (§147(6)(a)) 구법에서 발생하는 이원적 과세 「소득 발생 연도 Previous Year/ 납부 연도 Assessment Year」 문제를 신법에서 「단일 과세 연도 Tax Year」로 통합, 영토 내 입주한 글로벌 금융 기관의 세무 마찰 배제 및 세법의 글로벌 표준화 제고

§70 Transactions not regarded as transfer

(1) The provisions of section 67 shall not apply to transfer—

(...)

(r) of a capital asset made by a non-resident on a recognised stock exchange located in any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where the consideration for such transaction is paid or payable in foreign currency, and such capital asset is—

(i) bond or Global Depository Receipt referred to in section 209(1); or

(ii) rupee denominated bond of an Indian company; or

(iii) derivative; or

(iv) such other securities as may be notified by the Central Government;

(...)

○ (§70(1)(r)) 비거주자가 IFSC 내 거래소에서 외화(Foreign Currency) 결제를 조건으로 거래하는 채권·주식 예탁증서·루피화 표시 채권·파생상품 및 정부 지정 증권 한정 자본이득세 부과에 해당하는 과세 행위로 보지 않음을 규정

※ '자산의 매각이 법률상 양도(Transfer)'에 성립되어야 소득세법상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를 나열하여 과세 성립 요건을 원천 차단

- 세액을 부과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선언하여 비거주자 투자자의 인도 세무당국에 대한 소득세 신고(Tax Return) 및 고유 납세번호(Permanent Account Number) 취득 의무 면제를 적용하여 싱가포르·홍콩 수준의 세제 경쟁력을 확보

- 법역의 분리 없이 영토 내에서 거래 주체(비거주자·거주자), 결제수단(외화), 적격 거래 대상 등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국내 일반 자본시장과 과세 체계를 완전하게 분리한 기능적 역외성 구현

3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특성

□ 법제도 설계를 통한 영토 내 기능적 역외성

○ 본 연구는 인도 IFSC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4대 법률(경제특구법, IFSCA법, 외환관리규정, 소득세법)의 핵심 조문을 실증분석한 결과로서 영토 내 자본시장 거래 활동에서 기능적 역외성이 4대 요건에 기반하여 구현됨을 확인함

- ① 비거주자 거래 의제(FEMA §3), ② 외화표시 거래(IFSCA §20, FEMA §4), ③ 단일 감독체계 수권(IFSCA §12), ④ 자국 금융과의 분리(SEZ §53&17&18, 소득세법 §147)

- 인도는 역외거래 핵심 요건인 비거주자 지위, 외화거래 및 표기, 감독기관을 구성하여 비거주자가 감독기구의 승인 아래 외화로 거래하는 역외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환차익 및 세수 잠식 등 외화거래의 위험을 관리하여 영토 내에서 기능적 역외성을 설계함

○ 본 연구는 인도 국제서비스센터가 법역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 법역 모델과 다르게 자국의 기존 사법 체계(형법, 상법, 민법 등)를 유지할 수 있었던 조건을 특별경제구역 지정 및 외환·감독·세제 특례의 결합으로 확인함

<표2. 인도 GIFT IFSC 기능적 역외성 특성을 구성하는 4대 요건>

구분	법률 및 조문	주요 내용	제도의 효과
비거주자 및 역외수요거래	• FEMA IFSC Reg. §3 • 소득세법(2025)§70(r)	• 입주 기관의 외환법상 비거주자 의제 • 거래소 비거주자 외화거래 자본자산 양도 배제(비과세)	의제 대상의 거래를 세법·외환법상 완전한 국경 밖 역외 주체로 전환하여 국제 자본 유입 유도
외화표시 및 국제금융 거래	• IFSCA Act §20 • FEMA IFSC Reg. §4&5	• 금융서비스 전반에 지정 외화 사용 강제 • 자국 일반 외환관리 규정의 포괄적 적용 배제	본토 루피화 통화체계와 분리된 독자적 외화 결제 망 및 국제금융 환경 확립
별도 금융감독 체계 & 패키지형 조세 특례	• IFSCA Act §12 •소득세법(2025)§147	• 4대 감독기관 권한 통합 → IFSCA 단일 수권 • IFSCA 인허가 및 20년 100% 소득공제	단일 감독 규제와 패키지형의 파격적 조세 혜택이 직결된 원스톱 행정으로 국제 표준 제도 및 환경 구축
국내 금융시장과 분리된 체계	• SEZ Act §53&17&18 ••소득세법(2025)§147	• 관세영역 밖 의제(통관 거점화) 및 OBU 독립 분리 계정 운용 • 국내 기업의 단순 분할 및 이전 방지	자국 국내 금융시장 교란 및 국내 세수 잠식을 원천 차단하는 거시건전성 방화벽 형성

4 결 론

□ 연구 요약 및 학술·정책적 의의

○ (GIFT IFSC 특성 : 기능적 역외성) 본 연구는 인도 GIFT IFSC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법을 조문 단위로 실증분석하여 법역의 분리나 영미법계 독립법원의 신설 없이 자국의 실체법 내에서 자본시장의 기능적 역외성을 구현한 특례형 모델의 핵심 요건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성을 규명함

○ (영토 내 기능적 역외성 성립 요건 확인) 기능적 역외성은 개별 특례의 단순 나열이 아닌 ① 비거주자 지위 의제, ② 외화거래 표기 및 거래, ③ 단일 감독기관, ④

국내 일반 금융거래와의 분리라는 4가지 요건 결합이 필요하고 인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래 수요를 충족하는 금융 인프라를 법조문 설계를 통해 이를 구현함

ㅇ (법제도 결합을 통한 역외화 경로 제시) 영토 및 법역의 분리 없이 자국 실체법 간 정교한 조문 설계를 통해 거시경제 위험을 통제하면서 국외 역외시장 수준의 환경을 영토 내에서 구현할 수 있음을 규명한 실증 자료

□ 연구 한계 및 제도적 전제 조건

ㅇ (영미법계 사법 인프라 경로 의존성) 인도가 헌법 개정이나 영미법 기반 독립법원 신설 등 극단적인 법역(사법체계) 분리 없이 기존 법역 특례 모델을 성립할 수 있었던 기저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계승된 영미법 기반의 사법체계 및 영어 중심의 법적·행정적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음

- 인도 계약법(1872), 민사소송법(1908), 회사법(2013) 등 자본시장 관련 핵심 실체법은 이미 영미법적 법리에 기반하며 연방대법원 및 고등법원 공식 언어는 인도 헌법 §348에 따라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함

- 글로벌 금융기관이 계약법을 선택하거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의 국제중재를 특구 내에서 활용할 때, 자국 사법부와의 본질적인 체제 마찰이나 법리(번역·해석상)의 단절이 최소화될 제도적 호환성을 보유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음

- 본 연구가 규명한 인도 모델의 기능적 역외성 메커니즘은 기존 법역 특례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제도 설계의 틀을 제공하나, 법리와 언어적 인프라가 상이한 타 법역 국가에 단순 대입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비교 제도론적 한계가 존재함